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23일, 이훈기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11.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4. 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이훈기의원)

최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 비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적인 비행 행위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제재에 불과하기에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주요 시설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고자 함(안 제161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종수)

1. 비행금지구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61조제4항)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함으로써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함으로써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현행과 같음)
제166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7. (생 략) ④ ~ ⑦ (생 략)	제166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61조제4항제2호 및 제2호의2가---------- 6.·7.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면서,[1] 현행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2]

통제공역 중에는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인 '비행금지구역'이 있으며, 비행금지구역은 서울 일부구역 및 휴전선 인근, 원자력발전소 상공 등 아래 붉은색 경계선으로 이루어진 구역임.

---

1) 「항공안전법」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 한다)은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2의2.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법 제127조에 따라 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 비행금지구역 】

< ① 항공로 지도 >	< ② 지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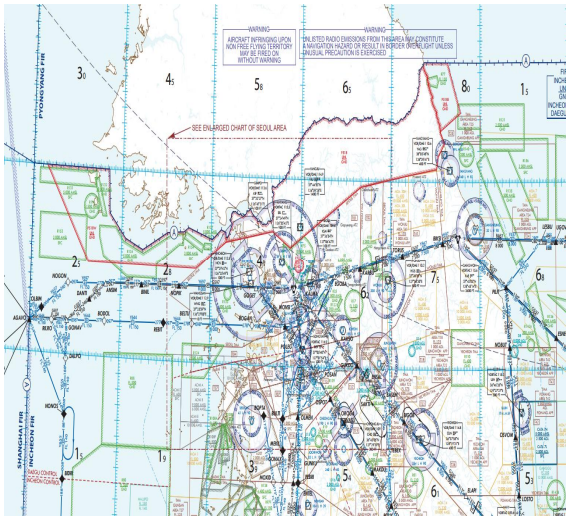	

※ 비행금지구역(P73, P518): **서울 일부구역** 및 **휴전선 인근** 붉은색 경계선으로 이루어진 구역 (**P73: 약 55.9km^2, P518: 약 13,029.2km^2**)

자료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

2.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구분		내용
관제 공역	**관제권**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관제구	「항공안전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비행장 교통구역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비관제 공역	조언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통제 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주의 공역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군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이 수행되는 공역으로 그 주변을 비행하는 자의 주의가 필요한 공역

※ 자료 : 국토교통부

한편, 이러한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 제127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3]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초경량비행장치 불법사용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4]

개정안은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려는 것으로,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고자 하려는 취지로 보임.

---

3)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4) 「항공안전법」

제16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제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법의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또는 과태료 규정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거나, 관제권에서 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제127조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1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관제공역 중 “관제권”과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과 관제권을 비행승인 없이 비행한 경우에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행금지구역을 제127조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없이 비행한 경우에도 유사한 수준의 제재처분을 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관련 조항 】

「항공안전법 」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② ~ ③ (생 략)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⑤ 법 제127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도를 말한다.

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2. 제1호 외의 지역: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⑥ 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공역 중 관제권과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을 말한다.**

[별표 23]

2.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구 분		내 용
관제 공역	관 제 권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관 제 구	「항공안전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비행장 교통구역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통제 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적용대상 위반행위	내용	현행 벌칙	개정안 벌칙
제127조 제2항	법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 공역에서 비행한 행위 (동법 시행규칙 제308조제1항 각호의 대상 제외)	제161조제4항제1호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127조 제3항	제127조2항 본문의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 없이 비행한 행위		-
	(1호) 지표면 등의 상단에서 150m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제166조제3항제5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호) 관제공역 중 관제권과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관제공역 중 관제권에서 비행한 경우** 제161조제4항제2호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한 경우** 제166조제3항제5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한 경우** 안제166조제4항제2호의2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개정안은 범죄 구성요건으로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함으로써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으나,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

게 규정함으로써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161조의 '비행금지구역'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으로, 개정안과 같이 벌칙을 규정하면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항공안전법」의 벌칙 구성요건과 합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항공안전법」에서 "비행금지구역"의 정의 등 필요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여 법체계상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5]되어 심사 중이므로 제재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법률의 심사과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초경량비행장치는 **무인자유기구 등 기구류**를 포함한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한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제재 수준이 일관성을 확보할 수

5) 2025.9.25.

있도록 벌칙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 비행금지구역 관련 부분 】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① ~ ④ (생 략)

⑤ 누구든지 제78조제1항에 따른 통제공역 중 안전·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이하 "**비행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기상관측, 국경행사, 시험 또는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 학교교육, 오락·놀이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개인의 취미·여가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3. 제2항·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비행허가를 받은 경우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

초경량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에 엔진을 부착하고 체중을 이동하여 방향을 조종하는 비행장치로서 자체중량이 115kg 이하이고 좌석수가 1개인 것
	회전익비행장치			로터블레이드(회전날개)에 의한 공기의 반작용에 의해 부양되는 비행장치로서 자체중량이 115kg 이하이고 좌석수가 1개인 것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기구류	유인자유기구		기체의 성질이나 온도차 등으로 발생하는 부력을 이용하여 하늘로 오르는 원리로, 사람이 탑승하는 비행장치
		유인계류식 기구		기체의 성질이나 온도차 등으로 발생하는 부력을 이용하여 하늘로 오르는 원리로 지상에 결박되어 있으며, 사람이 탑승하는 비행장치
		무인자유기구		**기체의 성질이나 온도차 등으로 발생하는 부력을 이용하여 하늘로 오르는 원리로,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기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로서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조종 또는 스스로 조종되는 비행장치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수직이착륙기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로서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선
	인력활공기			낙하산류 또는 합금소재 뼈대에 천을 입혀서 만든 사람이 아래 매달려 활공할 수 있는 비행장치

※ 자료 : 국토교통부

나. 관계 부처 및 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 비행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 중 “국가 안보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점과 처벌 상향으로 인하여 과도한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를 감안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드론기업인연합회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액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상당한 제재의 효과가 있고, 벌금을 500만원으로 상향 시 불법비행에 대한 제재 효과는 비슷하나, 드론비행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